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20026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200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356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유한회사 A의 파산관재인 Q

피고, 항소인 보령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변론종결 2024. 6. 18.

판결선고 2024. 8. 2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8. 선고 2022가단356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0.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패소한 B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의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호, 판사 조준호, 판사 황성욱